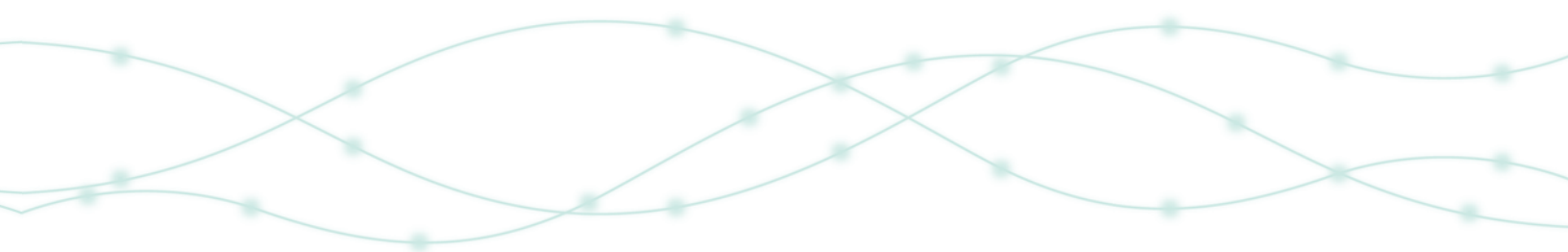


INDEX



NASC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오피니언

공지사항

01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김상노 부장_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부장

Tel_02,3149,7551 / e-mail_alcaz@kicpa.or.kr

1

제1차 국가회계 재정포럼 개최(7.15)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기준센터는 7월 15일 국가회계기준센터 대회의실에서 “성과평가와 프로그램원가의 효율적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차 국가회계 재정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기획재정부 조인철 재무회계팀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진회계법인 허웅 회계사가 발표하였으며, 지정토론은 지방행정연구원 이효 박사와 삼정회계법인 김창수 회계사가 맡아 주셨다.

발표자는 성과평가와 프로그램원가정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예산, 프로그램원가 및 성과평가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전제하고, 예산편성단계, 집행 및 결산단계, 성과평가단계로 나누어 총 6가지의 주요 논점 및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 OECD-ABS 연금워크숍 참석(4.22~24)



국가회계기준센터(박윤진 선임연구원의 1명)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OECD-ABS 연금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금번 워크숍에서는 OECD, 호주통계청(ABS) 등 회의 주최 기관 포함하여 12개국 국민계정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국가별 연금제도, '08 SNA에 따른 Table 17.10의 작성 관련 이슈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3 국가회계기준센터 3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7.26)



국가회계기준센터는 7월 26일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국가회계기준센터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조인철 재무회계팀장외 2명), 자문위원회(서울과기대 전중열 교수외 4명) 및 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 이권훈 전무외 2명)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국가회계제도 사업실적 보고, 조세연구원 이관 경과보고 및 국가회계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발표 후 논의가 진행되었다.

4

dBrain 시스템 개선사항 도출(6월)

국가회계기준센터는 2012회계연도 국가 재무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시스템 개선 업무에 착수하였다. 회계결산지원단이 작성·제출한 재무결산수행결과보고서 중 시스템 개선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시스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획재정부 재무회계팀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운영단과 협의할 예정이다. 2013회계연도 dBrain 시스템 개선은 통제기능, 조회기능 및 결산조정분개 개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및 결산담당자의 결산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수행된다.

5

2013 상반기 재무 결산 관리자 전문 교육(7.2~7.3) 및 국가회계전문교육 강사 지원(5.21~6.21)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재무결산의 주요 쟁점 및 향후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하여 「2013 상반기 재무결산 관리자 전문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문교육은 부처 결산담당자, 회계결산지원단,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 등 약 120여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일정동안 감사원 지적사항, 국가회계법령 및 지침 개정 소요, dBrain 개선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 교육에서는 국가회계결산지원단의 결산업무 지원 사례발표 및 분임토의를 통하여 지침 및 시스템 개선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가결산에 대한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지원단, 국가회계기준센터 및 중앙관서의 상호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수준별 국가회계전문교육에 대한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 국가회계전문교육은 통합과정과 특성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총 8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상반기 교육에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중심의 통합과정과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1과정이 서울 및 대전에서 진행되었으며, 8월 24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교육에서는 결산담당자를 위한 특성화 2, 3과정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02

국가회계제도 동향

김은영 부장_국가회계기준센터 재무통계부장

Tel_02,3149,7564 / e-mail_ekim@kicpa.or.kr

1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5.31)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와 채권, 채무, 국유재산, 물품, 예비비, 성과보고서 등 12개 부문의 결산 보고서를 5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결산 내용을 보면 국가채권 현재액은 202.5조원, 국유재산현재액은 892.2조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1.1조원과 17.9조원이 늘었다. 물품현재액은 9.2조원으로 전년보다 1.1조원이 줄었다. 재무결산 결과 자산은 1,580.4조원, 부채는 902.1조원으로 순자산은 678.3조원이다.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

제1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7.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지침 통과

국가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 등을 논의하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석준 제2차관)가 7월 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1호 안건으로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2호 안건으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민간전문위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단 및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국가회계제도심위원회 개최에 앞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안) 제정을 위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사전설명회가 6.21, 6.25, 6.26일 3차례에 걸쳐 국가회계기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전설명회는 제1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설명 및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민간전문위원이 참석하였다.

3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관련 재정통계 자문위원회 개최^(6,24) 및 공청회 참석^(7,4)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과 관련하여 6월 24일 재정통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7월 4일에는 한국조세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통계를 산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해 IMF 등 국제기구에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민관합동 작업반(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을 운영하여 국제지침, 해외사례, 국내여건 등을 감안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공부문 포괄범위, 우발부채 산출방안, 내부거래 제거,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관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경 산출방안을 확정하고, '14년 3월경에 20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할 계획이다.

4 기획재정부 및 국가회계기준센터 대표단, 아·태 재정관리협의체(PEMNA) 연차총회 참석^(5,23~26)

기획재정부 및 국가회계기준센터 대표단(단장: 기획재정부 이강호 성과관리과장)은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2차 아·태 재정관리협의체(PEMNA: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for Asia) 연차총회에 참석하였다. 금번 상하이 제2차 연차총회는 중국이 주최하였으며, 아태지역 국가 재정담당공무원 80명, 중국 재무부직원 60명, World Bank 담당자 30명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예산분과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하였다.

운영위원회에서는 PEMNA 회원국자격 논의(러시아 가입논의), PEMNA 다자신탁기금 설치 및 회원국 분담금, PEMNA 운영규정(회원국 규정, 조직, 예결산 등), 사무국에 회원국 직원 파견 및 국제기구 공동연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국가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한 연구’ 관련 설문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국고관리 사례에 대해 발표 및 심층논의가 이루어졌다.

예산분과위원회에서는 ‘전략적 계획과 예산’을 주제로 ① 재정건전성 및 총량규제, ② 전략적 예산 배분,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14년 연차총회는 몽골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5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 개최, 국가회계기준센터 조세연으로 이관키로(6.3)

기획재정부는 6월 3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투자촉진지원 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 방안」과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날 안건의 하나로 다루어진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 효율화 방안」에서는 조세연을 중심으로 성과관리, 기금·부담금 평가 등 사후평가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한편, 조세연 부설기관으로 「(가칭)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03

외국회계제도 동향

이혜진 연구원_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부

Tel_02,3149,7566 / e-mail_whateverhj@kicpa.or.kr

1 국제공공회계기준 위원회(IPSASB) 동향

① IPSASB,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표시(Presentation in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s)”에 관한 개념체계 공개초안 제4호 승인

IPSASB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표시”에 관한 개념체계 공개초안 제4호를 승인했다. 재무보고서 표시 및 공시를 다루고 있는 본 공개초안은 개념체계 제1~4장에 제시된 개념의 적용에 관한 표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공개초안을 통해 IPSASB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정했다.

- 표시 및 공시 등 핵심용어의 정의
- 정보의 선택, 위치선정 및 구성에 관한 결정 등 표시에 관한 의사결정

IPSASB는 표시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의 질적 특성 및 제약조건을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개념체계 제2장에 제시된 재무보고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며 표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본 공개초안의 공개 기간은 4개월이며, 본 공개초안과 요약본은 곧 발간될 예정이다.

② 개념체계에 서문 포함 결정

IPSASB는 개념체계에 서문(Preface)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IPSASB는 서문이 개념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서문의 승인 및 공표는 개념체계가 확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서문이 개념체계에 포함되면 서문에 제시되는 질적 특성과 개념체계 본문에 제시되는 개념 간의 연결고리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IPSASB는 개념체계개발 프로젝트 담당자가 제출한 서문 초안을 검토한 후 일부 수정사항을 권고했다. 특히 비자발적 이전 및 비교환거래, (involuntary transfers and non-exchange transactions) 그리고 공공부문의 영구성(the longevity of the public sector)에 관한 부분이 수정대상으로 지적되었다.

③ 국제공공회계기준(안) “재무제표 개요”를 권고실무지침으로 개정

일반목적 재무보고서(GPFR: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s) 관련 발간물에 대한 비강제성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지난 회의의 결정에 따라 IPSASB는 공개초안 제47호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공공회계기준(안) “재무제표 개요(Financial Statement Discussion and Analysis)”를 권고실무지침(RPG: 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으로 개정하였다.

기준서의 지위 변경으로 특정 용어의 수정이 예상되므로 IPSASB는 현 기준서(안)를 검토하여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권고실무지침(안) 및 결론도출근거에 대한 승인은 2013년 6월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④ 권고실무지침 제1호 “회계실체의 장기 재정건전성에 관한 보고” 수정방향 제안

IPSASB는 공개초안 제46호를 기초로 제정된 권고실무지침 제1호 “회계실체의 장기 재정건전성에 관한 보고(Reporting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an Entity's Finances)”를 검토한 후 수정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IPSASB는 장기 재정건전성의 관점들에 관한 부분을 수정할 것을 프로젝트 담당자에 지시했다. 즉, IPSASB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서비스(service), 수익(revenue) 및 부채(debt)의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고, 각 관점마다 역량 및 취약성의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도록 했다. 역량(capacity)이란 실체가 서비스, 수익 혹은 부채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취약성(vulnerability)은 실체의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벗어난 요소에 대한 의존도를 의미한다. 본 권고실무지침(안)은 수정을 거친 후 2013년 6월 회의에서 승인을 위한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⑤ 공공부문 업무결합(Public Sector Combinations)의 의견 검토

IPSASB는 검토의견서(CP: Consultation Paper)로 발행된 공공부문 업무결합(Public Sector Combinations)에 관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했다. 2012년 6월에 발행된 이 검토의견서에 대해 총 26건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번 검토과정을 통해 IPSASB는 공공부문 업무결합에 관한 이번 프로젝트의 범위를 검토의견서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본 검토의견서는 (a) 업무를 이전하는 기관의 자산 인식 및 제거, (b) 업무의 정의, (c) 계속기업의 가정에 관한 업무결합 기관의 의무 공시사항, (d) IFRS 제3호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s)”과 유사한 후속 측정사항, (e) IFRS 제3호를 기초로 자산의 취득, 실체 및 업무 취합, 병합 간의 구분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IPSASB는 본 검토의견서가 취합 및 병합을 구분하고 있는 방법이 적절한지, 더 나아가 동일지배 하의 공공부문과 동일지배가 아닌 공공부문을 구분하고 있는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개시했다. 본 논의를 바탕으로 IPSASB는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이와 같이 검토의견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분에 대한 예상결과를 2013년 6월 회의에서 요약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동 회의에서 IPSASB는 검토의견서에 대해 수립된 의견 및 예비적 견해에 대한 분석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⑥ 발생주의 IPSAS의 최초 적용관련 경과규정 논의

IPSASB는 IPSAS 제23호 “비교환거래(세금 및 이전)(Non-Exchange Transactions (Taxes and Transfers)),” IPSAS 제25호 “공무원 급여(Employee Benefits),” IPSAS 제32호 “민간투자사업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Grantor)”에 대한 경과규정을 분석한 후, 분류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시사항을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본 규정들은 3년의 이행기간 동안 일반 지침으로 적용되며, 적절한 판단에 따라 기준서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

2 미국 연방정부회계기준 자문위원회(FASAB) 동향

지난 4월 3일, 톰 앨런(Tom Allen) 미국 연방정부회계기준 자문위원회(FASAB,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의장은 보고실체 관련 연방정부재무회계기준서(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서(안)에 따르면, 일반목적의 정부통합 연방재무보고서(이하 “연방재무보고서”)의 보고 실체에는 (1) 연방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이 기관의 예산을 수립하는 기관(budgeted for by elected officials of the federal government), (2)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기관(ow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혹은 (3) 연방정부가 손익가능성을 부담하고 통제하는 기관(controlled by the federal government with risk of loss or expectation of benefits)이 포함된다. 또한 기준서(안)는 상기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고실체에서 제외된다면 연방재무보고서 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을 보고실체에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앨런 의장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1995년에 제정된 개념서(concepts)를 기준으로 연방재무보고서 대상기관을 판단한다. 그러나 그동안 연방정부와 관련 기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해졌다. 이번 기준서(안)는 연방재무보고서 이용자가 연방 보고실체의 재무정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기관과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번 기준서(안)는 연방재무보고서 대상기관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즉, 관련 정보를 연결재무제표에 제시할지 혹은 공시사항으로 표시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한다: 세금과 비교환수입 중 기관의 재원은 무엇인가?, 기관의 지배주체가 의회와 대통령 중 누구인가?, 기관이 연방정부에 위협과 보상을 부과하는가?, 기관이 재화 및 용역을 비시장기준으로 제공하는가?

연방재무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 대상기관은 ‘연결 실체(consolidation entities)’라고 표시하며 연방정부재무회계기준서 제34호에서 정의하는 ‘연방 실체’에 관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GAAP)상의 계층에 속한다. 연방재무보고서의 공시 대상기관은 ‘공시기관(disclosure organizations)’으로 표시한다. 공시기관은 연방 실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상의 계층에 속하지 않지만 기관의 회계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번 기준서(안)는 부처별 연방재무보고서의 작성 대상기관, 중앙은행의 활동에 대한 최소 공시사항, 관련 당사자에 관한 공시사항 등의 사안도 다루고 있다.

한편 FASAB 위원 중 한명은 이에 대해 이견을 나타내었다. 이 위원은 법정관리·정부관리·정부개입 하의 기관이 기타 공시기관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본 기준서(안)는 2016년 9월 30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권장된다.

3 미국 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GASB) 동향

① GASB, 자산·부채 측정 관련 개념서(안) 및 공정가치측정 및 적용에 대한 예비적 견해 발간

미국 지방정부 회계기준위원회(GASB: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향후 주·지방정부의 자산·부채 측정 관련 기준 제정 시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개념서 공개초안을 발간하여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GASB는 공정가치의 측정 및 적용, 주식 공시(the measurement of fair value and the application of fair value, including note disclosures)에 관한 예비적 견해(Preliminary Views)를 발간했다. 또한 회계전문가가 아닌 일반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견을 얻기 위해 동 개념서(안) 및 예비적 견해를 쉽게 풀어쓴 해설서를 펴냈다.

로버트 앳모어(Robert H. Attmore) GASB 의장에 따르면, “이번 개념서(안)는 측정기준과 측정

지표 등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 ‘측정’은 주·지방정부 회계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GASB 개념체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또한 그는 “GASB는 공정가치에 관한 기존 원칙을 개정하는 이번 예비적 견해와 개념서(안)를 통해 공정가치 측정 및 공시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측정에 대한 개념

개념서 공개초안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측정(Measurement of Elements of Financial Statements)”은 GASB가 주·지방정부의 자산·부채 보고금액(달러가치)의 결정에 관한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지침이 되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GASB는 공개초안에서 자산·부채의 두 가지 측정기준인 ‘최초 금액’과 ‘재측정 금액’을 제안한다. 최초 금액은 자산 취득 혹은 부채 발생 시 결정되는 반면, 재측정 금액은 매 재무제표일마다 새롭게 결정된다.

또한 GASB는 측정대상 자산·부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가지 측정지표에 대한 정의도 제시하고 있다.

-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는 실제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 지불한 가격이거나 부채가 발생할 때 수령한 금액이다.
- 공정가치(Fair value)는 측정일 현재 시장참여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산을 판매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혹은 부채를 양도할 때 지급하게 될 금액을 의미한다.
- 대체원가(Replacement cost)는 측정일 현재 정상적인 시장 거래를 통해 동등한 서비스 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결제금액(Settlement amount)은 비활성화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 간에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부채를 유동화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을 의미한다.

▶ 공정가치 측정 및 적용

GASB는 예비적 견해 “공정가치 측정 및 적용”에서 공정가치의 정의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 측정대상 자산·부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하는 공정가치 정보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본 예비적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된다. 투자자산은 정부가 수익 창출을 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투자자산의 현재 서비스능력은 오로지 현금 창출 능력, 판매를 통한 현금 창출 능력, 혹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조달 능력에만 기초한다.

공정가치 측정대상에서 배제된 일부 투자자산은 기존의 GASB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이러한 투자자산에는 취득시 만기가 1년 이하인 자본시장 금융상품 등이 있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주·지방정부는 시장가격이 아닌 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경우 공정가치 산출 과정을 기술해야 한다. 본 예비적 견해는 이러한 공시의무를 확대하여 정부가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투입한 변수 및 이와 같은 투입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내린 판단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GASB, 비교환 금융보증 보고규정 개선

4월 22일, GASB는 비교환 금융보증(Nonexchange financial guarantees)을 주고받는 주·지방정부가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 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서를 승인했다.

GASB 기준서 제70호 ‘비교환 금융보증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for Nonexchange Financial Guarantees)에 따르면, 다른 기관 및 정부에 비교환 금융보증을 제공하는 주·지방정부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대신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50%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비교환 금융보증이란 보증 제공자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없이 제공하는 신용개설 및 보증을 의미한다. 보증 제공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채권자에게 지급의무를 다하기로 약속한다. 비교환 금융보증의 예로는 주정부가 지역내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제공하는 보증이나 개인의 주택 융자에 대해 제공하는 보증 등이 있다. 이때도 주정부는 보증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

비교환 금융보증은 대가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대개는 보증 제공기관이나 채무기관의 재무제표 및 주석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보증이 보증 제공기관의 자원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권인 동시에 채무기관의 채무에 대한 잠재적인 감소를 의미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로버트 앳모어(Robert H. Attmore) GASB 의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최근의 경기 여건상 투자자들은 미상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보증을 비롯한 신용개설 및 보증 등을 점점 더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환 금융보증을 규율하는 일관적인 인식 및 공시 관련 지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번 기준서 제70호가 제정되었다. 이번 기준서를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정부의 보증지급에 대한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준서 제70호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도 포함한다.

- 보증 제공기관은 채무 부담 가능성이 50%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정성적인 요소(qualitative factors)를 고려해야 한다. 그 예로는 채무자의 극심한 재정난, 파산 및 구조조정 절차 개시

등이 있다.

- 보증 제공기관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보증 제공기관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기관은 상환의무가 법률로 해소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계속 부채로 기록해야 한다. 상환의무가 법률로 해소되면 채무기관은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보증 제공기관이나 채무기관은 비교환 금융보증의 금액과 성격을 공시해야 한다.

본 기준서 제70호는 2013년 6월 15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권장된다.

4 유럽 회계제도 동향

① 영국 하원, 통합재정보고서의 활용도 제고 요구

영국 의회 내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는 정부가 통합재정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의 활용도를 높여 비용 대비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재무성에 촉구했다. 통합재정보고서는 정부 재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1,500여개 공공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한 보고서이며, 영국 하원은 이러한 통합재정보고서가 아직은 재정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의미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2010-11 회계연도 통합재정보고서(2012년 10월 발행)에 기록된 공공부문 재정적자(annual deficit)는 공공부문 연금개혁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683억 파운드 감소한 944억 파운드이다. 한편 순부채(net liabilities)는 2010-11 회계연도말 현재 1조 1,934억 파운드로 지난해(1조2,120억 파운드)와 비슷한 수준이다. 민간투자사업 706건에 대한 미래 채무부담금액(Future obligations)은 1,446억 파운드로 추정되며, 의료태만 배상청구소송 및 핵무기 해체비용에 각각 175억 파운드 및 609억 파운드가 책정되었다.

하원은 통합재정보고서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원은 통합재정보고서에 기록된 핵심 재무리스크나 채무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재무성이 범정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급증하고 있는 의료태만 배상청구소송 비용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마가렛 헛지(Margaret Hodge) 공공회계위원장은 작성 2년차를 맞은 통합재정보고서가 현재로서는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정교한 회계처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

서 각 부처 경영진은 통합재정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살펴보면서 핵심수치가 해당 부처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공공회계위원장은 덧붙였다.

공공회계위원장에 따르면, “통합재정보고서를 통해 현재 175억 파운드에 이를 만큼 급증한 의료에만 배상청구소송 비용과 같은 국가의 핵심 재무리스크를 파악하고 그 관리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합재정보고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부담금 1,446억 파운드 및 핵무기 해체를 위한 추정비용 609억 파운드 등 과거 결정으로 인한 재무적 결과를 강조함으로써 정부가 보나온 지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재정보고서를 통해 연간 212억 파운드의 세금이 소요되는 횡령 및 오류 방지 노력 등과 같은 핵심 영역에서의 정부 성과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원은 재무성에 보고서 발행시기를 앞당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2010-11 회계연도 통합재정보고서의 경우 발행에 19개월이 걸렸으며, 그 이후 감사원장으로부터 한정감사의견을 받았다. 공공회계위원장은 발행시기가 지연되면 보고서의 유용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하면서, “재무성은 명확한 계획을 세워 통합재정보고서의 적시성(timeliness), 완전성(completeness) 및 품질(quality)을 개선하고, 재정관리 지원을 위한 보고서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공회계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공공재정회계사회(CIPFA)도 한 목소리를 냈다. 공공재정회계사회는 통합재정보고서가 의사결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티브 프리어(Steve Freer) 공공재정회계사회 회장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는 현재 획득한 감사의견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것과 보고서를 보다 적시에 발행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통합재정보고서를 산출함으로써 정부부문 재무보고에 있어서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 이제는 통합재정보고서의 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그 투자의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 또한 대중에게도 재정의 건전성을 알리고 논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통합재정보고서 정보의 활용도는 점차 높아질 것이다. 재무성의 경제 관련 성명서 등에서 통합재정보고서 정보를 활용한다면 통합재정보고서 활용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재무성 대변인은 “통합재정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영국의 재정신뢰도가 향상된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볼 때 재정투명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통합재정보고서는 정부가 수립한 공공지출 체계의 일부분일 뿐이다. 전체적인 공공지출 체계는 의심할 여지없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도 1/3이나 줄었다.”고 덧붙였다.

② EU 이사회 의장, 회원국 공공부문회계기준 단일화 필요성 제기

헤르만 반 롬푸위(Herman Van Rompuy) EU 이사회 의장은 유럽공공부문회계기준(EPSAS, Europea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브뤼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EU 전역에 단일 회계기준이 적용되면 재정정책에 대한 감독이 용이해지고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단일 회계기준은 유럽 통합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적절한 기준을 제정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럽 각국의 공공부문 재무보고서 통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롬푸위 의장은 “EU의 경제·재정 통합이 가속화될수록 공공부문 통계의 일치화 필요성이 높아진다. EU는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강화하고 예산감독과 관련된 두 개의 법안(‘two-pack’)을 마련함으로써 재정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원국 재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강화된 재정감독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회계제도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즉, 각국은 공평한 잣대로 재정을 감독하고, 예산 조작을 통한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규정에 기반한 예산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신뢰성 있는 재정통계가 적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산관리 체계는 권고사항 및 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관리 체계를 수립할 때는 유럽의 ‘특수성, 절차, 제도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브뤼셀 컨퍼런스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최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집행위원회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이 유럽공공부문회계기준(EPSAS)의 ‘명백한 참고기준’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롬푸위 의장은 EU 회원국 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예산공조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재무보고서의 통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유럽이 통합을 가속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경제·통화 연합으로 진전하려면 일반정부의 모든 하부기관을 아우르면서도 국가간 비교가능한 공공부문 재무보고서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각 회원국의 예산체계가 연방형에서 중앙집중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럽연합의 경우 건전한 재정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단일 회계기준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회계책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신뢰성·적시성·완전성을 갖춘 공공부문 재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예산정책 논의가 가능하게 된다. 공공부문 회계제도의 통일화를 통해 각 회원국 차원에서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예산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5

국제통화기금(IMF) 회계제도 동향

▶ IMF, 재정투명성규정 개정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과정 중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2013년 초에 수립한 재정투명성규정(Fiscal Transparency Code)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재정투명성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IMF가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재정투명성 강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정보만으로는 정부의 재정상태(financial position), 재정전망(financial outlook) 및 재무리스크(financial risks)를 완전하고 신뢰성 있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재정투명성이 향상된다면 정부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국회 및 국민은 정부의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재정투명성규정 개정안은 최근 경제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을 재무보고기준(fiscal reporting standards)에 반영하고, 재무보고기준과 이미 발표된 재정정보의 격차를 파악하여 제거하고, 더 나아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런 목표에 따라 IMF는 정책입안자, 국회의원, 국민 및 시장관계자가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다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투명성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6개월 간 IMF는 재정투명성기준(fiscal transparency standards) 및 평가방법(evaluation tools) 확립 방안에 관한 정부, 시민단체, 학계 및 시장관계자의 의견을 구했다. 이렇게 실시한 1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오늘(7.1일) 재정투명성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IMF는 이번 2차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투명성규정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재정투명성규정의 변천

재정투명성이란 재정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정보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명확성(clarity), 신뢰성(reliability), 적시성(timeliness), 목적적합성(relevance)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투명성은 효율적인 재정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재정투명성(fiscal transparency) 및 재정성과(fiscal performance)와 재정지불능력에 관한 인식(perceptions of fiscal solvency)이 비례한다는 실증연구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IMF의 재정투명성규정과 부속 매뉴얼 및 지침은 1998년에 제정되고 2007년에 개정된 이래 재정투명성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기본골격으로 여겨졌으며, 또한 각국이 규정상의 원칙 및 실무사례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IMF는 1999년부터 94개국에 대해 111

회의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및 규정 준수에 관한 재정보고서(Fiscal Reports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를 발표하였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재무보고의 범위, 품질 및 적시성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를 통해 심지어 선진국조차 재정상태, 재정전망 및 재무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IMF가 최근 펴낸 한 정책보고서는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반영하고 이후에 재발할 수 있는 재정 불투명성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투명성규정 및 평가도구 등 기존의 재정투명성 기준과 감독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정투명성규정 개정안

이번에 발표된 재정투명성규정 개정안은 그 구조와 내용이 기존 규정과 상당히 다르다. 개정안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부가 보고한 산출물(reported outputs)을 강조: 2007년 재정투명성규정의 상당부분은 재무 보고에 적용되는 법률적·제도적·절차적 규정의 명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2007년 규정이 제시한 원칙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지만, 이 원칙을 재구성함으로써 투명성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의 품질(Quality of fiscal reports)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공시되는 재정정보를 1) 재무보고(fiscal reporting), 2)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fiscal forecasting and budgeting), 3) 재무리스크 분석 및 관리(fiscal risk analysis and management)라는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원칙을 제공한다.
- 거시경제정책 수립(macroeconomic policymaking)에 필수적인 이슈를 규정: 이번 개정안은 거시경제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재정투명성 관련 이슈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공공지출 및 재정책임성(PEFA: 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평가제도와와의 상호보완성을 높이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이번 개정안은 2007년 규정보다 재정리스크 분석 및 관리를 보다 강조하는 한편, 2007년 규정이 정한 공공부문 고용, 조달 및 내부감사 절차 관련 원칙을 제외했다. 관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안은 PEFA 평가제도가 제시하는 세부성과지표의 평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 금융위기의 교훈(lessons of the crisis)을 반영: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기의 교훈을 반영하였다. 그 예로는 재무보고서의 작성 대상기관 확대, 대차대조표 정보의 범위 확대, 재무보고의 주기 및 적시성 제고, 재무리스크 분석 강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재무감독 활성화, 재정전망치와 연중 재무보고 수치 및 연말 재정수치의 일관성 제고 등이 있다.

- 단계별 실무사례(graduated practices) 제공: 2007년 재정투명성규정은 각 원칙의 모범사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45개 원칙의 실무사례를 기본단계, 우수단계, 최우수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단계별 실무사례를 통해 각국은 선진적인 국제기준을 완벽히 준수한다는 최종 목표 하에 단계적인 달성목표를 세울 수 있다.
- 정량적 지표(quantitative indicators) 제시: 정부가 발표한 재정정보의 품질과 재정투명성 실무사례의 불일치 정도를 보다 엄격히 분석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정량적인 재정투명성 지표를 새로 추가했다. 재무보고서 작성 범위, 재정전망치의 신뢰도, 미보고 우발부채의 규모 등을 측정할 값이 지표로 포함된다.

▶ 새로운 재정투명성 평가 방식

이번 개정안은 ‘기준 및 규정 준수에 관한 재정보고서(Fiscal Reports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를 대신할 ‘재정투명성평가(FTA: Fiscal Transparency Assessment)’를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준 및 규정 준수에 관한 재정보고’와 달리 FTA는 각국이 보다 분석적이고 비교가능하며 실무적인 방식으로 재정투명성 실무사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FTA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결과의 이해도 제고: FTA가 요약하여 제공하는 “히트맵(heat map)”을 통해 각국은 규정이 정한 재정투명성 원칙 및 실무사례와 관련하여 자국의 강점과 개선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히트맵을 통해 다른 국가와 비교하거나 개혁 소요를 파악할 수 있다.
- 분석력 강화: FTA는 재정투명성규정이 정한 정량적 재정투명성 지표를 이용하여 정부가 보고한 재정정보의 충분성 및 품질과 규정 미달 정도를 평가한다.
- 단계적 실무대책: 재정투명성 부문에서 개혁이 필요한 핵심 사안이 있는 국가에 대해 FTA는 이러한 국가가 중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대책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 모듈식 평가: FTA를 구성하는 세 가지 모듈인 1) 재무보고, 2)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 3) 재무리스크 분석 및 관리는 평가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독립적인 모듈이다. 이러한 모듈식 평가를 통해 시급한 현안에 집중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지난 몇 달간 IMF는 유럽 및 남미지역의 선진국, 신흥국, 저소득국에서 FTA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시범 실시 결과는 재정투명성규정 개정안의 원칙 및 실무사례를 보다 개선하는 데 반영되었다. 각국 관련당국의 승인 하에 IMF는 이번 시범 평가의 최종보고서를 2013년 말에 발간할 예정이며, 2013년 말에 시범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04

오피니언

박윤진 선임연구원, 임정혁 연구원

Tel_02,3149,7569 / e-mail_mj7998@kicpa.or.kr

Tel_02,3149,7553 / e-mail_rau438@kicpa.or.kr

1 「OECD-ABS 연금 워크숍」 참석 후기

국가회계기준센터(박윤진 선임연구원의 1명)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OECD-ABS 연금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금번 OECD-ABS 연금 워크숍은 호주통계청이 주최하였으며, OECD, 호주통계청(ABS) 등 회의 주최기관 포함 12개국 국민계정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요 국가별로 운용중인 연금제도에 대한 현황 보고, 주요 국가별 확정급여제도(DB) 연금부채의 측정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토론 및 SNA 2008에 따른 Table 17.10의 작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OECD의 조사내용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A 상 연금수급권(Pension entitlements)금액 측정이 중요과제임을 공감하였다.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로 운용중인 연금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공감하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비교가 필수적이므로 OECD 측의 조속한 기준제정을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둘째, 현행 GFSM 2001에는 구체적인 연금관련 규정이 없어 연금수급권 금액 추정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어, IMF에서는 2013년 하반기 중 GFSM 2001을 개정하여 해당 부분을 보완할 계획임을 밝혔다. GFS 통계자료는 SNA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정 예정인 GFS 매뉴얼 적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참가국 중 캐나다는 기존 Table 17.10가 가계부문의 퇴직대비저축과 같은 저축계약을 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Table 17.10 이외의 별도 Table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워크숍에서는 연금계약 및 저축계약의 명확한 기재를 위한 양식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추가되는 양식은 캐나다 측이 2013년 3분기에 발표되는 미국측

자료를 참고하여 완성한 후 OECD 실무진 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넷째, 확정급여제도(DB)의 연금수급권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가정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의 통계기관에서 자체적인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다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산출을 위해 보험계리사가 산출한 추정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만약 자체 추정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가정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 예측에 따라 결정되는 할인율 또는 임금 상승률 가정의 경우에는 매해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 국가가 처한 환경이 다름을 감안하여 연금수급권 측정을 위한 접근법인 PBO, ABO 중에서 특정 접근법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하지는 않지만, 각 접근법의 채택 사유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기술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번 연금워크숍 참석을 통해 주요 OECD 국가별로 운용중인 연금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SNA 2008에 따른 연금부채의 측정(주요 가정 및 산출방법) 및 보고방식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2 「제2차 아·태 재정관리협의체(PEMNA) 연차총회」 참석 후기

정지웅 선임연구원

Tel_02,3149,7568 / e-mail_jwng113@kicpa.or.kr

기획재정부 대표단(단장: 성과관리과장)은 2013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2차 아태 재정협력체(PEMNA) 연차총회에서 운영위원회, 예산분과위원회(B-COP), 재정분과위원회(T-COP) 등에 참석하였다.

PEMN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재정제도·정책에 대한 연구, 경험공유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한 준국제기구로서 세계은행(WB)과 한국 등의 주도로 2012년 6월 7일 공식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사무국(조세연구원내 설치)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번 상하이 제2차 연차총회는 중국이 주최하였으며, 아태지역 국가 재정담당공무원 80명, 중국 재무부직원 60명, WB 담당자 30명 등 170여명이 참석하여 역내 재정관련 협의체로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다.

첫날 오프닝세션 이후 모든 주요순서는 예산분과위원회(B-COP)와 재정분과위원회(T-COP)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재정분과에 참여하였다. 재정분과에서는 ‘국가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한 연구’ 관련 설문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국고관리 사례에 대해 발표 및 심층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이 여유자금운용 및 금융기관예치, 단기국채 발행 및 한국은행 차입제도를 설명하였다.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국고금관리 효율화 방안을 추진 중으로 본 세션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편, 예산분과는 ‘전략적 계획과 예산’을 주제로 ① 재정건전성 및 총량규제, ② 전략적 예산배분,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비효율적인 지역예산배분방식의 개선을 위한 수요가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한 타당성 심사 등 후속 연구 및 회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본 총회 마지막 날에 있었던 운영위원회에서는 PEMNA 회원국자격 논의(러시아 가입논의), PEMNA 다자신탁기금 설치 및 회원국 분담금, PEMNA 운영규정(회원국 규정, 조직, 예결산 등), 사무국에 회원국 직원 파견 및 국제기구 공동연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또한 2014년 연차총회는 몽골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PEMNA 연차총회를 통해 회원국 및 주변국으로부터 PEMNA에 대한 관심이 점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EMNA는 현재 한중일, ASEAN 10개국, 몽골동티모르 등 15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러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타 지역 재정네트워크와의 연계 및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EMNA는 재정제도·정책 연구 및 경험공유를 목표로 출범하였지만, 중장기적으로 회원국의 재정제도 및 정책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PEMNA 운영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운영방향 주도, 사무국 운영 및 재정적 기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 기여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국가회계기준센터 등 한국 재정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PEMNA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쌓고 국제적 교류능력을 향상함과 동시에 한국의 재정운용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쪼록 이제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한 PEMNA가 잘 정착되어 아·태 지역에 영향력 있는 재정협력체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05

공지사항

전승진 _국가회계기준센터 행정팀

Tel_02.3149-7561 / e-mail_ sj80@kicpa.or.kr

1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안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 회원가입 또는 ② 02-3149-7560~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는 국가회계관련 뉴스, 발간자료, 기준 및 법령, 세미나 및 교육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소 국가회계에 관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코너와 FAQ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정부회계저널,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등의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3 국가회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 제안

국가회계제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의 [의견제안] 메뉴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